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 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8일

성 북 구



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(2025.12.18.~2026.01.01.)
2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, 8층)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
(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97 우성빌딩 401호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
 - (1) 사 업 명 칭 : 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 - (2) 구 역 면 적 : 6,218㎡
 - (3) 조 합 원 수 : 52명
 - (4) 사업 시행자 : 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 - (5) 변 경 내 용 : 조합정관 및 조합원 변경
6. 의견제출 및 문의 :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☎02-2241-2932)

공 랑 의 건 서

공 고 명
(사업명)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의견제출인

성 명
(개인/단체)

주 소

생년월일

전화번호

의견 내용

장위11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제 출 인

2025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성북구청장 귀하